

제 3.10 호

1972. 11. 7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전화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75-6444. 6090

시 보

차 례

이 공보실장은 공보실장으로서
공보실장을 임명하였음.
1972. 11. 7.
서울특별시 시민과장

◎ 조 례	
제 737 호	서울특별시 위생처리장 설치조례..... 3
◎ 규 칙	
제 1270 호	서울특별시의 무축탁규정중 개정규칙..... 3
제 1271 호	서울특별시 직업안전위원회 규칙..... 4
◎ 공 고	
제 246 호	환지에정기 변경 지정..... 5
◎ 사 령 5

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위생처리장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11월 6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737 호

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

제 1 조 (목적)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생처리장 (이하 "처리장"이라 한다) 을 둔다.

제 2 조 (명칭 및 위치) 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.

제 3 조 (직무) 처리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- 1.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
- 2.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생성되는 부산물의 처리와 이용방법의 연구발전
- 3.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의 연구발전
- 4. 기타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에 관계되는 사항

제 4 조 (장장) ① 처리장에 장장을 두되 장장은 3급을류 또는 4급갑류 일 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 장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장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

다.

제 5 조 (공무원) 처리장에 두는 장장이 외의 필요한 공무원의 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6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의무촉탁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11월 6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270 호

서울특별시의무촉탁규정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의무촉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2. 직책수당 지급기준 가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직책수당은 과배당 월별실적포에 의한다. 다만, 제 1 층 전염병동 및 남부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촉탁에게는 대월 200%의 실적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지역안정위원회 규칙을
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시장 양택식

1972년 11월 6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271 호

서울특별시직업안정위원회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
제 5 조 제 1 항 및 직업안정위원회규
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
별시직업안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
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조직) ① 서울특별시직업안정위
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
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서 구
성한다.

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
위원장은 보건의사회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직업안정에 관한 학식과
경험이 풍부한 자 및 근로자와 사용
자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
한다.

제 3 조 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1년
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
천입차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)

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
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
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
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
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의
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
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
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
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6 조 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
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
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협조의 요청) 위원회는 관계
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
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8 조 (수당과 여비) 위원에 대하여
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
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
급할 수 있다.

제 9 조 (감사) ① 위원회에 감사 1인
을 둔다.

② 감사는 사회과장으로 한다.

제 10 조 (운영요령) 위원회의 운영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
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◎ 서울 특별시 공고제 246 호

환지예정지 변경지정

1. 72. 10. 2.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2 호 계획변경 공고한바 있는 역촌 신림, 시흥, 경인,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합니다.

2.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도면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 1 과 또는 영등포구청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

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① 환지예정지 변경내역 (생략)

1972. 11. 6.

서울 특별시 장

사 령

◎ 1972. 11. 6.

경남 산청군 행정 주 사 이 갑 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

지방행정주사에 입학.

7 호봉을 급함.

중 구 근무를 명함.

전남 광산군 지방행정서기 정 우 성
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

지방행정서기에 입학.

5 호봉을 급함.

용산구 근무를 명함.

서울 특별시 장